

동북지방통계청 공무원근로자(청사미화원) 채용공고

동북지방통계청에서는 공무원근로자(청사미화원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5. 11. 17.

동북지방통계청장

1.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

채용구분	근무 부서	채용 인원	계약 방법	채용일	근로조건	임금
공무원근로자 (청사미화원)	조사지원과 (지방청 본부)	2명	근로계약	2026.1.1. (예정)	일 7시간, 주 5일근무 - 근로시간: 07:00~15:00 - 휴게시간: 12:00~13:00	금1,901,370원 (급식비, 상여금 등 별도)

- 근무장소: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, 동북지방통계청
- 근로시간(7시간) 및 휴게시간(1시간)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 가능

※ 임금은 2025년 기준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

※ 1개 부서만 지원 가능, 향후 상황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

※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는 『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』, 『통계청 취업규칙』, 『통계청 임금협약서』 등을 따름

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청사미화	· 동북지방통계청 청사 내·외부 및 기타 지정장소의 청소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

3. 채용 방법

1차 서류전형 → 2차 면접전형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결격사유 유무 및 이중취업 여부 확인(검업 불가)
→ 채용 확정(수습기간: 3개월) → 적격성 심사 → 정규 임용

□ 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□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직무 및 실무지식, 공무수행자로서의 소양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
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□ 수습기간: 2026. 1. 1. ~ 2026. 3. 31.(3개월)

- 수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원근로자(정년 만60세)로 임용
-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4. 채용 일정

○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: 2025. 11. 17.(월) ~ 2025. 12. 1.(월) 18시까지

○ 접수방법 및 접수처: 이메일(e-mail) 및 등기우편, 방문 접수

기관명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	주소
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	김근효	053-609-6514	rmsgy0420@korea.kr	(우편번호: 41422)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

- 이메일: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에 한하며, 제출서류는 반드시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(접수 후 문자 발송, 유선확인 요청)

* 이메일 제목: 청사미화원 공무원근로자 지원서(성명)

- 등기우편: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

○ 1차 서류전형: 2025. 12. 3.(수)

○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5. 12. 8.(월)

○ 2차 면접일시: 2025.12.10.(수), 세부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고

○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12. 15.(월)

- 각 전형별 동북지방통계청(mods.go.kr/ardb),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SMS 발송

○ 수습근로자 근무시작일 : 2026. 1. 1.(목) 예정

5. 응시 자격요건(판단기준일: 공고일 현재)

□ 필수요건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(정년) 미만인 자
※ 응시연령은 면접일 기준이며,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
- 통계청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
(단,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 자는 제외)

채용 결격사유

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□ 가점 및 우대사항

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우대: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- 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저소득층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 우대: 1차 전형에 반영
 - 저소득층의 범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
 - 다자녀 양육자: 만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
 - 북한이탈주민: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)
- 장애인 우대: 1차 전형에 반영
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
□ 불합격 처리 대상

- 채용서류 미비자, 거짓 작성자(2년간 불합격 처리)
-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(통계청)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정당한 사유* 없이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(소속기관 포함)와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
 - *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(질병, 가족간호, 타지역 이사,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)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6. 제출서류

□ 필수 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- 【붙임1】 서식
- ② 응시원서 - 【붙임2】 서식
- ③ 자기소개서 - 【붙임3】 서식
- ④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- 【붙임4】 서식

□ 추가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① 경력증명서(청소업무를 포함한 일반경력)
-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, 2020.11.16.~2025.11.17. 기간 내 경력만 인정
-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- 【붙임5】 서식
- ③ 우대사항 증빙서류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【붙임5】 서식)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

□ 평가기준 상세

- 기타점수(최대 5점) / 제출서류: 항목별 참고

점수	제출서류
장애인(3점)	장애인등록증
저소득층(2점)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1부모가족세대주 관련 증빙서
다자녀(2점)	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
북한이탈주민(2점)	북한이탈주민 확인서

※ 여러 항목에 해당 되어도 최대 5점 부여 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가능)

-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~10점) 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

7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실시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 위원에게 제공됨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('25.12.1.(월) 18시)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최종 합격자는 동북지방통계청 각 채용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며, 종료 10일 전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채용 여부를 결정함
 - ※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문의 사항: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채용담당자 김근호 주무관(053-609-6514)

<붙임1>

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채용구분	성명	서명
공무직근로자(청사미화원)		(서명)

▣ 작성목록(총괄표)

목 록	제출 여부
1. <붙임2> 응시원서(필수)	
2. <붙임3> 자기소개서(필수)	
3. <붙임4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필수)	
4. <붙임5>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	
5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
6. (우대사항) 기타 증빙자료 사본(해당자에 한함) - 저소득층, 다자녀양육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대상자)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5)로 대체 가능	
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

* 제출서류에 대하여 '제출 여부'란에 "○" 표시 후 함께 제출

** 등기우편 제출 시,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
(스테이플러 사용금지)

< 응시원서 작성요령 >

※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.

0. 응시번호: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1.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휴대전화·e-mail: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2. 주소: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3. e-mail: 본인의 해당 이메일을 “ID@가입회사” 형태로 기재합니다.
(예) hongildong@hanmail.net
4. 경력사항: 해당 분야(청소)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력을 기재합니다.
(기재한 모든 경력은 증명서 제출 필수)
*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
5. 기타: 저소득층, 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은 해당란에 체크

※ 자기소개서 제출 시 “작성요령” 등 불필요한 부분 삭제 후 제출

<붙임3>

통계청 공무원근로자 자기소개서

- 아래양식 참고로 하여 자율적으로 기재 가능

직종	공무원근로자 (청사미회원)	지원부서	<input type="checkbox"/> 본부	응시 번호	미기입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

[과거 경력, 지원동기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작성]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